

# 「2021 국제환경규제 대응」 우수 기업 및 유공자 정부포상 안내서

2021. 08.



## 1. 목적

국내외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친환경 경영과 대응 활동에 앞장 선 우수 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2021 국제환경규제 대응 우수 기업 및 유공자 정부포상』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안내를 목적으로 함

## 2. 포상 부문·훈격·규모

포상부문	포상훈격·규모	대 상
○ 우수 기업상(2점)	○ 장관표창	○ 생산, 판매, 수출 기업
○ 유공자상(4점)	○ 장관표창	○ 대기업/중소기업/ 공공기관/단체 임직원

## 3. 포상 일정

- 포상 공고(홈페이지 게재) : '20. 08. 13.
- 포상 접수 및 대상자 발굴 : '20. 08. 13. ~ 09. 30.
- 포상 추천자 선정(포상평가위원회) : '20. 10. 07.
- 포상자 결정(산업통상자원부) : '20. 10. 29.
- 포상식(국제환경규제대응엑스포) : '20. 11. 18.

## 4. 포상 대상 및 자격요건

부문	신 청 자 격
우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경영, 환경규제 기술·제품 개발, 공정 개선, 환경규제대응시스템 운영, 환경규제 전문 인력 양성, 친환경 공급망 관리 등의 활동을 통해 국제환경규제 사전·적기 대응 및 성과 확산 모범기업 또는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li> <li>○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li> </ul>
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경영활동, 환경규제 기술·제품 개발 및 공정 개선, 환경규제대응시스템 도입 등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국제환경규제 대응 및 정보·성과 확산,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li> <li>○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 등 관련 임·직원 또는 종사자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표창추천일 기준)</li> </ul>

## 5. 추천 제한 대상

### 가. 재포상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1)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 (2)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나. 포상추천 제한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2)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사항에 해당되더라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대표자와 임원

(7)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8)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입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9)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10) 부도적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11)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2)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 202 - 7693)
  -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범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접속방법은 산업기술개발과에 문의)

## 6. 장관표창 취소

가.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나.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7. 신청 및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1년 8월 13일(금) ~ 9월 30일(목)

나. 신청서 배포 : 포상신청과 관련된 서류양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ompass.or.kr>)에서 다운로드

### 다.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이메일(lifecat@kncpc.re.kr)로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파일 및 스캔본) 송부, 이동식 메모리(USB) 별도 우편 제출\*
  -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22 한신인터밸리24 동관 18층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선욱 연구원(☎02-2183-1532)

### 라. 제출서류

- 부문별 제출서류(※ 반드시 이동식 메모리(USB)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
  - 평가표 작성에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사본 반드시 첨부
- 기업부문

제출 서류	수량	서 식	비 고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국제환경규제 대응 경영보고서	1부	별지 제2호	
3. 공적요약서(기업)	1부	별지 제3호	
4. 정부포상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9호	
5. 19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	
6.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8. 기술력(인증, 특허, 실용신안 등) 입증서류	각1부	-	
9. 그 외 평가 관련(환경경영활동, 시스템 및 DB 구축, 모니터링활동, 교육 및 행사, 수출실적 등) 입증서류	각1부	-	별표1 참고

- 유공자부문

제출 서류	수량	서 식	비 고
1. 신청서	1부	별지 제5호	
2. 공적 조서	1부	별지 제6호	
3. 공적요약서(유공자)	1부	별지 제7호	
4.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서	1부	별지 제8호	
5. 정부포상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9호	
6. 직무관련(자격증 사본 등) 입증서류	각1부	-	
7. 기술력(인증, 특허, 실용신안 등) 입증서류	각1부	-	
8. 그 외 평가 관련(유공경력, 환경경영활동, 시스템 및 DB구축, 교육 및 행사, 수출실적, 제도·공정 개선 및 기술·제품 개발 등) 입증서류	각1부	-	별표1 참고

## 8. 심사 및 포상추천 대상자 선정

### 가. 심사 기준

- 기업
  - 서류 평가(20점), 국제환경규제 대응 활동 기여도(80점) 평가기준에 따름
- 유공자
  - 국제환경규제 대응 활동 기여도(100점) 평가기준에 따름

### 나. 포상평가위원회

- 학계, 산업계 및 관련단체 등 5인 이내의 전문가로 위촉함
-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공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평가항목을 정하여 이를 평가 점수에 가감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에서 공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표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함

## 9. 시상식

- 포상은 2021년 11월중 개최하는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에서 실시함